##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25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이해식・김성회・윤후덕

홍기원 • 박정현 • 황명선

황정아 · 정을호 · 정준호

복기왕 · 염태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 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1의2.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		
	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		
<u>11의2.</u> ・ <u>11의3.</u> (생 략)	<u>11의3.</u> · <u>11의4.</u> (현행 제11호의		
	2 및 제11호의3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